

한국체육대학교 법무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심의 번호	제 2023 - 호
심의년월일	2023. 5.

심의 사항

한국체육대학교 법무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23. 5.

1. 제정이유

- 교무행정의 전문화·체계화와 본교 구성원에 대한 법률지원 제공을 위한 법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무지원단은 교내외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 및 교무처가 필요로 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6명 이내로 구성(안 제3조)
- 교무분야(행정소송 및 교원징계 등)에 관한 법률자문, 본교 구성을 상대로 한 법률 상담 및 구조활동, 본교와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대한 조정역할 등 법무지원단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법률자문절차 및 자문회의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법률자문의 효과 및 법률상담 내용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참고)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붙 임 : 제정(안)

한국체육대학교 법무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3.xx.xx. 규정 제xxx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무행정의 전문화·체계화와 본교 구성원에 대한 법률지원 제공을 위한 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무지원단의 구성, 운영방법 및 자문효력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법무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6명 이내로 총장이 위촉 및 선임하며, 교무처에 설치한다.

1. 「한국체육대학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문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본교 소속 교원
 3. 그밖에 교무처가 필요로 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 ②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 및 재선임 가능하다.

제4조(업무) 법무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등을 수행한다.

1. 교무분야(행정소송 및 교원징계 등)에 관한 법률자문
2. 총장 및 본교 학칙에 따른 각 조직이 요청한 법률 자문
3. 본교 구성원을 상대로 한 법률 상담 및 구조활동
4. 본교와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조정 역할
5. 그밖에 본교의 준법행정과 관련한 업무의 수행 및 연구

제5조(법률자문절차) ① 법무지원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법무지원단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통보 전에 법률 자문의 결과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본교 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2.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방법) ① 법무지원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지원단은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이 때 업무담당자 및 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법무지원단이 법률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증거 등의 제출을 소관부서에 요구한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법률자문의 효과) 자문을 요청한 본교의 행정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지원단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9조(법률상담 업무) ① 법무지원단은 본교 구성원의 법률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담의 요청 방법 및 처리절차는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을 위한 의견을 제공한 고문변호사 및 민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제XXX호, 2023. x. xx.)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